

제조소[ ]  
위험물 저장소[ ] 용도폐지신고서  
취급소[ ]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자            | 처리일자 | 처리기간           | 5일 |
| 설치자  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소<br>(전화번호 : )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| 제조소등의 구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|    |
| 설치허가<br>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       | 년               | 월    | 일 / 제          | 호  |
| 설치완공검사<br>연월일 및 검사번호       | 년               | 월    | 일 / 제          | 호  |
| 위험물의 유별,<br>품명(지정수량), 최대수량 |                 |      | 지정수량의 배수<br>배  |    |
| 폐지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| 년               |      | 월              | 일  |
| 폐지사유 및 방법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|    |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폐지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청인

(전화번호

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 
소방서장 귀하

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첨부서류 |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
작성방법
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성명 포함)을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입합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의 기재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( 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